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 4826호) 4조 1항에 의하면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병을 포함한 재해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더욱이 국가의 사회적·경제적 여건에 따라 시대적으로 업무관련성의 범위나 인정기준 등 개념이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산업보건분야 관련 종사자들은 관심을 갖고 항상 그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본 란에서는 관계자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 발행되는 '산재보험법판례속보'에 게재된 내용을 선별하여 업무상 재해 인정에 관한 최근의 법원 사례를 소개합니다.

'건설공사 현장감독'의 급성뇌경색 발병이 업무상인지의 여부

판결요지

이 사건 질병 중 고혈압과 당뇨병은 원고가 ○○건설에 입사하기 오래전부터 앓아 온 기존질환이고 비록 원고가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 급성뇌경색과 소뇌경색이 발병하기는 하였으나 원고는 인력관리 및 잡자재 조달과 작업감독 등 별반 신체활동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관리업무만을 수행하여 온데다가 위 공사가 시작된 후 뇌경색증 발병일까지 원고의 업무내용 및 업무량과 근무강도에 특별한 변화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원고의 업무가 육체적으로나 심적으로 특별히 부담이 될 만한 일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바 원고의 급성뇌경색 및 소뇌경색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유발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판결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7. 5. 17. 소외 ○○개발주식회사에 입사하여 1997. 10. 5. 11:30경 서울 서대문구 홍제3동 서울북부도시고속도로 2공구 터널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팔·다리

서울행정법원 1999. 1. 14.
 선고 98구876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당 사 자】 원고 서○○
 대리인 우○○
 피고 근로복지공단
【주 문】 원고청구기각

마비증세가 나타나 동신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급성뇌경색·소뇌경색·당뇨병·고혈압으로 판명되어 1998. 3. 17. 이 사건 요양을 신청함.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질병은 원고가 위 공사 현장에서 인원·자재·작업관리 등의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누적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

2) 사실관계

(1) 원고는 ○○개발이 소외 ○○건설주식회사로부터 도급 받아 시공하는 서울북부도시고속도로 2공구 공사 중 터널 라이닝 및 슬라브 공사부문과 평창동쪽 환기구 공사부문의 현장 책임자로 일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공사부문에 소요되는 1일 평균 50~60명의 인부를 확보하여 위 공사부문 현장에 투입한 후 그들의 출근상황을 관리하고 결원을 보충하는 인력관리 업무 및 못·철사·결속선 등의 잡자제조달 업무와 인부들에 대한 작업감독 업무를 수행하였다.

(3) 원고는 출·퇴근에 관하여 ○○개발로부터 아무런 관여를 받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공사부문 현장에서 간간이 야간작업이 이루어진 관계로 원고가 22:00 또는 23:00경까지 현장에 남아있는 경우가 있었으나 그 경우에는 직접 작업에 참여하지는 아니한 채 휘하의 반장 등을 통하여 작업감독을 하였을 뿐이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질병 중 고혈압과 당뇨병은 원고가 ○○건설에 입사하기 오래전부터 앓아 온 기존질환이고 비록 원고가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 급성뇌경색과 소뇌경색이 발병하기는 하였으나 원고는 인력관리 및 잡자제조달과 작업감독 등 별반 신체활동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관리업무만을 수행하여 온데다가 위 공사가 시작된 후 뇌경색증 발병일까지 원고의 업무내용 및 업무량과 근무강도에 특별한 변화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원고의 업무가 육체적으로나 심적으로 특별히 부담이 될 만한 일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아울러 원고가 오랜 기간 고혈압과 당뇨병을 앓고 있음에도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과로나 스트레스가 개재되지 않는 경우에도 뇌경색이 발병할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급성뇌경색 및 소뇌경색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유발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법원**